



# MINI Market Report

국가	필리핀
제품	숙취해소음료

주관사 :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
## CONTENTS

<b>I. 필리핀 통관 정보</b> .....	<b>1</b>
1. 관세 및 기타 세금 .....	1
2. 수입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.....	6
<b>II. 필리핀 검역 정보</b> .....	<b>14</b>
<b>III. 필리핀 라벨링 정보</b> .....	<b>17</b>

※ 참고자료

# 필리핀 통관 정보

## 1. 관세 및 기타 세금

### □ 관세율

HS CODE	국문품명	관세율
1603	육 · 어류 · 갑각류 ·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	0%
1603.00.99	기타	0%

### □ 관세 및 부가가치세

- 필리핀의 ‘관세법(Tariff and Customs Code)’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(보통 종가세(ad valorem))를 적용하고 있으며,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품은 관세율이 낮고, 현지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경쟁하는 수입품은 관세율이 높음
-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: ASEAN) 및 ASEAN 자유무역지대(ASEAN Free Trade Area : AFTA)의 회원국으로서 필리핀은 2008년 말 농산물을 제외하고 모든 상품에 대해 최대 5%로 ASEAN 내 무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였고, 모든 비ASEAN 국가들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혜국(Most Favored Nation : MFN)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
- 필리핀은 수입대체를 장려하는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나, 1981년 관세개혁 프로그램(Tariff Reform Program) 및 수입 자유화 프로그램(Import Liberalization Program)으로 무역 정책을 전환하였음
- 관세위원회(Tariff Commission)에 따르면, 1981년 이후 20년 간 관세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 명목관세율이 1981년 42%에서 2003년 개혁 프로그램 종료 시 6.1%까지 점진적으로 인하되었음
- 이후 민감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이 2003년 1월까지 원료에 대해서는 3%, 완제품에 대해서는 10%, 2004년 1월까지 모든 나머지 생산물

---

에 대해서 동일하게 5%로 인하될 계획이었음

-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국내 산업 및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 1월에 개시되는 관세율 인하 계획을 연기하여, 최종 목표 관세율인 단일 5%를 시행하지 않았음
- 2007년 1월 약 50%의 상품에 대해 0~3%의 최혜국 관세율이 적용되었고, 15%의 상품에는 5 ~ 7%, 24.8%의 상품에는 10~15%의 관세율이 적용되었음
- 한편, 3%의 상품에는 20%, 6.83%의 상품에는 20%를 초과하는 관세율이 적용되었으며, 큰 변화 없이 동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완성차(CBU)의 수입은 비 농산물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, CKD(Completely Knocked Down) 부품 및 구성품에 대한 관세율은 승용차에 대해서는 3%, 다른 모든 차종에 대해서는 1%로 적용되는 반면, 최신 완성차에 대해서는 30%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
- 필리핀은 곡류, 가축, 돼지고기 및 가금류 고기, 설탕, 감자, 양파, 마늘, 커피와 같은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 2단계의 관세정책을 유지해 왔는데, 동 품목들은 관세할당물량(Tariff Rate Quota: TRQ)을 적용받는 한편, 최소시장접근물량(Minimum Access Volume: MAV)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할당물량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었음
- 필리핀도 무역 자유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속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음
- 그 결과로 2010년 평균 관세율은 7.02% 수준으로 민감 품목과 초민감 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분야가 11.94%일 뿐 광업(2.28%) 및 제조업(6.18%)은 평균 관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- 최소시장접근물량은 세계무역기구(WTO) 규정에 따라 2005년 6월에 종료된 반면, 신규 WTO 협정의 부재로 농업부(Department of Agriculture : DA)가 여전히 현행 관세할당물량체제를 유지하고 있음
- ‘농어업현대화법(Agriculture and Fisheries Modernization Act)’에 따라, 농어업 기업들은 모든 종류의 농어업 투입물, 장비 및 기계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고 있으며,

- 1999년 1월 1일부터 118개 농어업 투입물, 장비 및 기계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음
- 당초에는 상기 품목들에 대한 무관세가 2003년 2월 8일까지 허용될 예정이었으나, 2004년 3월에 제정된 ‘공화국법 제9281호’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농장 장비, 투입물, 예비부품의 무관세 수입 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였음
  - 2004년 1월 1일에 수립된 AFTA의 공동유효특혜관세(CEPT)체제에 따라 별도의 관세감축 계획이 개시되었음
  - 공동유효특혜관세에 따른 관세율은 ASEAN 회원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는데, 거의 모든 세 번에 대해 관세율이 0%로 인하되었으나 석유화학, 합성수지, 일부 플라스틱 상품, 민감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음
  - AFTA 이행계획에 따라 필리핀은 2006년 1월에 상기 예외상품에 대한 관세를 5%로 인하하였고, 석유화학제품 및 일부 생산품에 대한 관세율도 공동유효특혜관세 관세감축 계획에 따라 더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
  - 2008년 7월 공동유효특혜관세의 관세인하 대상품목(Inclusion List)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품의 80%에 대한 관세가 0%로 인하되었음
  - WTO 정보기술협정(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)의 참여국으로서 필리핀은 2000년 1월부터 대부분의 정보기술 장비 및 투입물에 대해 0%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
  - 2007년 10월에는 ASEAN-중국 자유무역지대협정(ASEAN China Free Trade Area Agreement), 같은 해 11월에는 한-ASEAN 자유무역지대협정(ASEAN South Korea Free Trade Area Agreement)에 따른 필리핀의 관세 이행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명령이 발효되었음
  - 2008년 11월에는 같은 해 10월에 비준된 필리핀과 일본 간 경제파트너십협정이 발효되면서 필리핀의 산업 및 농업 수출품의 거의 95%(금액 기준)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음
  - 2008년 1월에는 원유 및 정유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국제 유가에 따라 조정되도록 규정한 행정명령이 실시되었음

- 필리핀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데 재판매 또는 재사용을 위한 수입품에는 12%의 부가세가 부과되며, 관세청(Bureau of Customs : BOC)이 관세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총 가격에 수입관세, 물품세 및 여타 수수료(우편료, 보험료, 수수료 등)를 더하여 부가세가 결정됨
- 필리핀은 2000년 1월 1일부터 WTO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품 가격의 결정 근거로 거래가격을 이용하고 있음
- 1999년 통과된 ‘반덤핑법(Antidumping Act)’에 따라,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및 무역업자를 처벌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
- 동법에 따라 제조국가 내에서 판매되는 정상적인 물품가격과 수입자에게 판매된 가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덤핑 관세로 부과될 수 있음
- 1995년 2월부터 발효된 ‘공화국법 제7843호’에 따라, 덤핑상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결정하는 3가지 지표로 바로 이전 3개월의 해당 월평균 수치 대비 판매량의 5% 감소, 판매가격의 2% 하락 또는 국내 생산량의 5% 감소 등이 있음
- 특별위원회가 반덤핑 결정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, 수출국이 현지 산업에 대해덤핑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수출 보조금을 공여하는 경우에도 필리핀은 보조금과 동일한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
- 특별 관세는 필리핀 생산품에 대해 차별하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됨
- 1999년 통과된 ‘상계관세법(Countervailing Duties Act)’에 따라, 상공부(DTI) 또는 농업부 중한 개 부처에서 원산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수입 생산물 또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
- 필리핀에서 유사 품목 총 생산량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생산자들의 지지를 받으면 누구든지 해당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신청할 수 있음
- 초기 조사 중에 보조금을 받은 증거가 발견되면 상공부 및 농업부 장관이 보조금 추정액과 동일한 현금채권 형태로 임시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, 관세위원회가 실제 보조금 수혜 여부와 국내 생산자들의 피해 여부를 결정하게 됨
- 유사 상품 총 생산량의 최소 25%를 차지하는 국내 생산자들이 수입품에 대해 대항조

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동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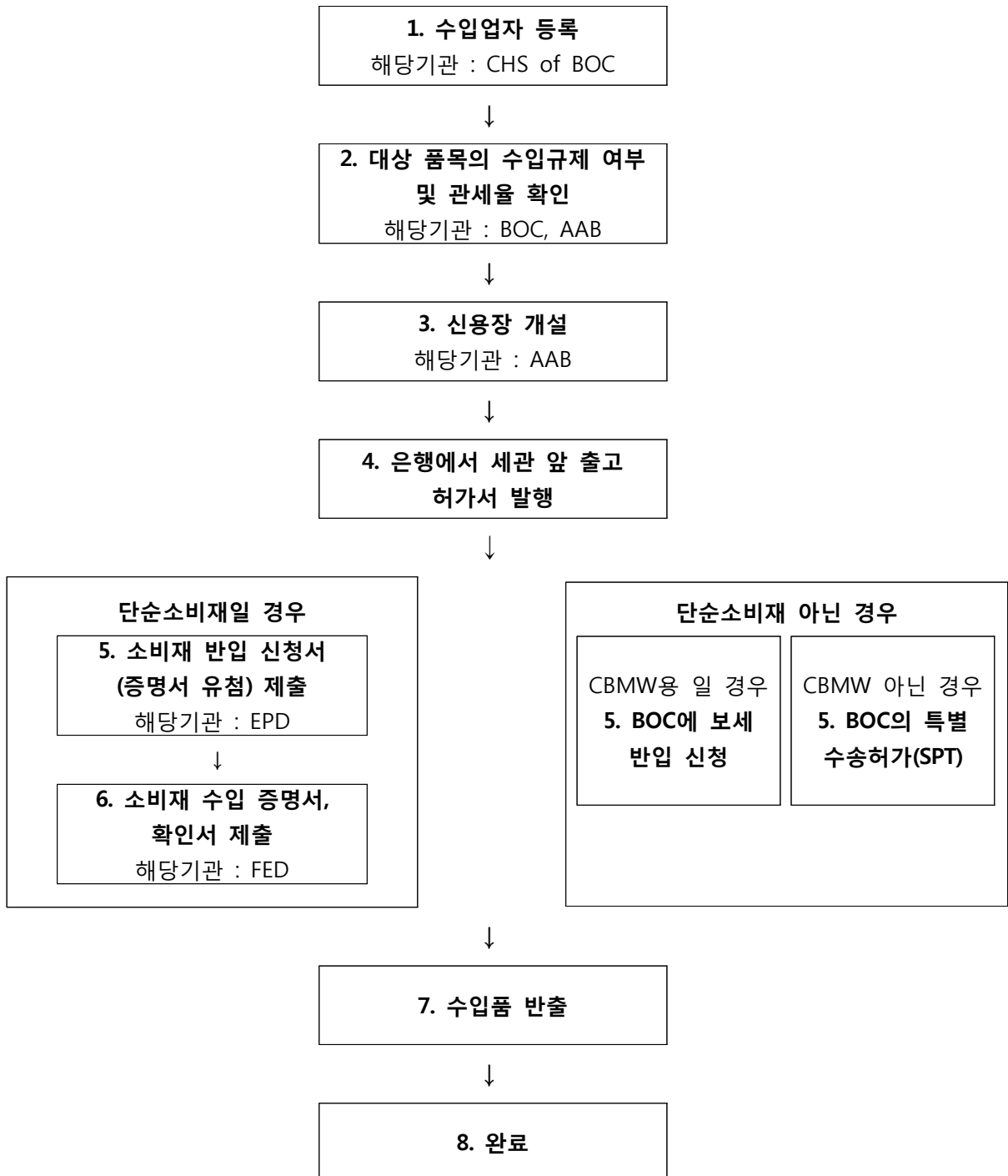
- WTO에서는 이러한 대항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외국 생산자 및 해당 정부 앞으로 조사 전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음
- 보조금에는 교부금, 대출금, 지분 투입, 대출 보증, 세금 면제, 상품 구매, 자금공여기관 앞 출연, 직접 / 간접 소득 또는 가격 지지 등의 형태가 있음
- 보조금 관련 대항조치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관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세심판소 앞으로 항소할 수 있음
- ASEAN 산업협력(ASEAN Industrial Cooperation : AICO)계획에 따른 특별관세 특례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소 2개의 ASEAN 회원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현재까지 승인 받은 생산품의 대부분은 자동차 및 소비재였음
- AICO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위원회(BOI)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투자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함

<부가가치세>

국가	표준세율	감소세율	약자
필리핀	12%		RVAT = Reformed Value Added Tax 현지에서는 Karagdagang Buwis

## 2. 수입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

### □ 필리핀의 수입 통관



- CIIS - Customs Intelligence Investigation Service
- BOC - Bureau of Customs



- AAB - Authorizes Agent Bank
- EPD - Entry Processing Div
- FED - Formal Entry Div
- SPT - Special Permit to Transfer
- CBMW - Customs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
  
- 정부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없는 상품 가운데 쌀과 옥수수, 시안화나트륨, 페니실린 및 유도체, 석탄 및 석탄 유도체, 정유 석유제품, 폭약 제조용 화학제품, 살충제, 자동차 및 부품과구성품 등이 있음
  
- 수입 규제품목 및 규제기관의 전체 목록은 2009년 1월 필리핀 중앙은행(BSP)이 발행한 외환거래규정 안내서(Manual of Regulations o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)의 부록 2에 있음
  
- 동 안내서의 부록 3과 3.1, 필리핀 ‘관세법’의 Section 101에는 금지 수입품 목록이 포함되어 있음
  
- 금지 수입품에는 다이어마이트, 화약, 탄약 및 기타 폭약, 정부 전복 또는 법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지지하거나 신체상해 위협이 포함된 인쇄물, 포르노물, 마취약, 낙태 유발 약품 및 물질, 카드를 제외한 도박 장비, 복권 및 도박경마 마권과 해당 광고 및 추첨목록, 순도 또는 품질표시가 없는 귀금속 및 귀금속의 합금, 부정표시/불량 식품 또는 의약품, 마리화나, 양귀비, 코카인, 헤로인 또는 기타 마약류 또는 합성 의약품, 중고 의류 및 의복, 장난감 소화기(小火器) 및 폭약, 클로로플루오로카본 및 기타 오존파괴 물질(단, 오래된 장비 수리용으로만 2010년까지 허용)등이 포함되어 있음
  
- 국립식품청(National Food Authority: NFA)이 일반 쌀의 독점 수입자로서 옥수수의 수입에도관여하고 있음
  
- 민간 곡물상은 국립 식품청이 발급한 수입허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고급 또는 특상 쌀을 수입할 수 있으며, 민감 농산물은 최소시장접근물량(MAV) 및 관세할당물량(TRQ)의 적용을 받음
  
-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포장식품, 약품 및 화장품은 식품의약국(Bureau of Food and Drugs)에 등록되어야 함
  
- 식품의약국은 부정표시 및 불순품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되거나 판매용으로 내놓은

---

모든 미등록 수입 식품 및 의약품을 몰수할 수 있음

- 농업부(DA)의 식물 산업국(Bureau of Plant Industry)이 신선 과일 및 야채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음
- 모든 수입 과일 및 야채는 식물 산업국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하여 검역 승인이 필요하며, 필리핀 수입자는 매 선적에 대해 검역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
- 1999년에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농업 투입물 및 원료가 발표되었으며, 면세수입 농업원료 관련 인센티브는 2015년까지 연장되었음
- 관세청(BOC)이 모든 관세 평가, 분류 및 승인 역할을 전담하고 있음
-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물리적인 선적 전 검사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으나, 모든 수입자 또는 대리인들은 공인된 부가가치시스템공급자(Value Added System Provider : VASP)가 설치한 컴퓨터를 통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그 다음에는 단일행정서류(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: SAD)라고 불리는 수입 신고서가 관세청의 컴퓨터로 전송되어 자동세관운영시스템(Automated Customs Operating System : ACOS)에서 처리됨
- ACOS의 선택적 검사 시스템에 따라 모든 수입품의 약 70%는 세관검사가 생략되고, 세금 및 관세는 관세청(BOC)과 컴퓨터로 연결된 은행으로 바로 납부됨
- ACOS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적물을 저위험(green or regular lane), 중위험(yellow lane) 또는 고위험(red lane)으로 분류하고 있으며, 중위험의 선적물은 서류 검토, 고위험의 선적물은 항구에서 물리적 검사를 받음
- 저위험의 선적물은 서류나 물리적 검사 없이 통관하는데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고, 고위험의 선적물은 통관하는데 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, 많은 수입자들은 사실상 2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
- 관세청은 2002년 소위 ‘초저위험(super green lane)’을 추가하였는데, 관세 및 세금 납부 측면에서 최고 수입업체 1,000개 중 에서 선발되어 공인 받은 100여개 업체가 이 레인에서 통관절차를 받을 수 있음

- 동 업체들은 수입 선적물의 일상적인 서류 검사 및 물리적 검사를 받지 않고, 단지 수입품을 신고하기만 하면 됨
- 정부는 공인 받은 업체들 중에서도 어느 업체나 공장을 감사할 수 있으며, 수입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적발된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음
- ‘초저위험’ 을 이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약 2,000 달러의 일회성 회비 및 매월 요금과 별도로 거래건 별로 2,500 페소의 서비스수수료가 부과됨
- ‘초저위험’ 이 적용되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‘초저위험’ 의 모든 수입 통관수속은 전자자료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통과해야 하며, 관세청은 모든 세금과 관세가 전액 납부되고, 선적물에 규제 또는 금지 상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음
- 수입업체 또는 중개인은 필리핀 항구에서 통관수속 처리기관(Entry Processing Unit)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제출서류에는 ①세관통과 및 내국세 수입신고서(Entry and Internal Revenue Declaration : IEIRD) (BC Form 236), ②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, ③상업송장, ④포장명세서, ⑤식품약품국(Bureau of Food and Drugs) 면허 등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음
- 수입품에 대한 서류 검사 및 물리적 검사 후 검사관이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컴퓨터로 송부하면, 다음으로 ACOS가 인가 상업은행에 납부되어야 할 관세 및 세금을 계산함
- 2000년 1월 1일에 발효된 ‘관세행정명령 제2/99호(Customs Administrative Order 2/99)’ 에 따라, 거래가격이 수입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되게 되었으며, 이는 필리핀의 WTO 의무사항 중 하나였음
- 수입업자들은 많은 경우에서 상품의 평가액에 대한 분쟁이 수입품의 선적절차를 지연시킨다고 항의를 해왔는데, 이것은 선적물을 검사하고 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1990년대 필리핀 정부가 계약했던 스위스의 선적 전 검정회사인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(SGS)가 이전에 제공했던 평가액 자료가 지속적으로 갱신되지 못했기 때문임
- 관세청은 필리핀의 각 항구에 가격분류 검토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분쟁을 처리하는 항소기관을 분산시켜 왔음. 그러나 무역업자들은 이러한 체제가 검사관 및 감사자들의

재량권을 확대시켜 부정부패 및 밀수 기회를 늘리고 있으며, 일부에서는 부패한 검사관들에 대해 수입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

- 필리핀에 소재한 상업은행들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 송금, 신용장, 인수인도조건(Documents Against Acceptance : D/A), 청산결제방식(Open Account : O/A), 지급인도조건(Document Against Payment : D/P) 등의 방식으로 수입대금 지급을 위한 외화를 매도할 수 있음
- 대금 지급을 위한 외화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수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, 수입업자가 외화 보통 예금계좌의 자체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수입품 또는 외화 대금 지급 없이 해외에서 공급업체가 보낸 수입품과 위탁 판매를 전제로 들어온 수입품 등이 이에 해당됨
- 2004년 4월 ‘관세사법(Customs Brokers Act)’ 은 필리핀의 관세 중개업무(관세사 업무)를 규제하고 있으며, 기업들에게 관세청과의 모든 수출거래를 위해 전문 관세사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에 발효되었음
- 기업들이 사내 관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법안이 하원 승인을 거쳐 2008년 1월 상원에 제출되었으나, 동 하원 법안이 2009년 2월 공무위원회(Committee on Civil Service) 및 세입위원회(Committee on Ways and Means)에 계류 중으로 통과되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됨
- 수입상품의 라벨링과 표시에 대한 요건에 따라, 상품라벨은 원산지, 브랜드, 상표 또는 상표명, 물질 또는 화학성분, 순 중량 및 크기, 제조업체 또는 재포장업체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
- 밀수 방지를 위하여 허위 표시 또는 부적절한 라벨링에 대해 최고 5,000 페소의 벌금과 6개월 징역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음
- 선적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, 5%의 표시종가세(ad valorem marking duty)가 부과됨
- 수리, 가공 또는 재조정을 위해 필리핀으로 들여오거나 완성 시 재수출하기 위하여 들여온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됨

- 그러나 해당품목이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출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확인된 관세, 세금 및 기타 수수료의 1.5배에 달하는 보증서를 수입신청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함
- 2007년 7월 상공부(DTI)의 의류 및 직물 수입업무 특별위원회(Garments and Textile Import Services Special Committee)는 의류 수출업체들이 보세창고를 통해 들여온 원료 수입품에 대한수입허가 요건을 폐지하였음
- 구비 서류
  - 마지막 입, 출국 날짜가 적혀져 있는 여권
  - 비자
  - 주거인가증
  - 취업 허가증
  - 물품 목록(각 물품에는 영문으로 "used" 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)
  - 공제를 위한 구비 서류
  - 세관 보증보험
  - 보증서
  - 은행지급보증
  - 정확한 비자 종류
- 모든 수입가공식품은 BFAD(필리핀식약청)에 등록되어야 함
- 가공식품 등록 기준에는 카테고리 1과 카테고리 2가 있으며 각각 등록 기간이 차이남
- 수입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BFAD에서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제품을 등록할 수 있음
- 선적물은 비자가 확인되어지기 전에는 도착하지 못하며, 선적물은 고객의 도착 전 60일 이내 또는 도착 후 60일 이내에 도착해야 함
- 모든 선적물은 도착 즉시 100% 검열을 해야 하며, 모든 가정용품과 일상 용품은 수입 이전에 최소 6개월 동안 고객이 소지해야 함
- 임시 방문객은 가정용품, 생활용품, 차량을 가져올 수 있음. 단, 6개월 안에 반출 보증서 제출. 또는 징수된 관세와 세금을 지불해야 함

- 이민자와 영주권자는 모든 가정용품과 생활용품은 세금을 모두 지불하며 한 개의 선적물(비행기 또는 배)에 면세품이 허용
- 비영주권자나 첫 방문객은 모든 가정용품과 생활용품이 7,8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금과 면세가 적용
  - 과세품 및 규제품
  - 동물, 물고기, 식물
  - 영화, 비디오 테이프, 디스크
  - 의학 용품- 통신 장비
  - 색 재현 기계
  - 자동차 부품

□ 필리핀, 수입통관 개편

- 통합관리시스템(NSW) 운영으로 통관절차 대폭 간소화
- 최대 3주 소요기간 30분 이내로 단축될 듯
- 신속한 수입지원 시스템 구축
- 필리핀의 수입절차가 지금보다 대폭 빨라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수입업체들이 편해지는 동시에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됨
- 필리핀 정부는 기존의 통관시스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NSW(National Single Window) 프로그램을 도입, 빠르면 3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발표
- 이 프로그램은 수입허가에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며 관세청은 물론 각종 정부기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시간을 단축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
- 수입업체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만 관세청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처리하는 것으로 수입허가에 관련된 10개 정부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
-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에 필요한 관세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업무를 종료하는 것

---

이며, 접수기관(관세청)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30분 내에 통관서류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함

- 해당 10개 정부기관은 다음과 같음. 이들과 관련된 수입업무가 전체의 70%에 이룸
  - 투자청(Board of Investments)
  - 동물 산업청(Bureau of Animal Industry)
  - 관세청(Bureau of Customs)
  - 식품의약청(Bureau of Food and Drugs)
  - 국세청(Bureau of Internal Revenue)
  - 식물산업청(Bureau of Plant Industry)
  - 제품표준청(Bureau of Product Standards)
  - 국립 식품청(National Food Authority)
  - 필리핀 경제구역청(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)
  - 설탕규제청(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)
- 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관세청과 유관기관에 걸쳐 있는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통해 수입 업무를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임
- 또한 아세안(ASEAN)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맞춰 회원국 간 통관시스템의 일원화 방향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신속한 수입통관을 통한 무역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춤
-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수입업체들은 그 동안의 수입 통관 절차에 투입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음
- 또한 수입통관으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역내 교역활성화를 더욱 촉진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
- NWS(National window scheme)이 가동되면 온라인으로 필요한 수입신고를 마칠 수 있고 거의실시간으로 수입허가가 가능함
- 기존에 수입허가 기간이 최대 3주가 소요됐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평가

## II 필리핀 검역 정보

### □ 검역 정보

#### - 사전수입허가가 요구되는 물품

- 살아있는 식물
- 묘목(번식물질로 사용되는 생명력이 있는 그들의 일부분도 포함)
- 특별 검역령 하에서 수입금지 또는 제한품으로 공포된 신선 과일, 채소 및 기타물품, 유해한 과실과리류가 분포하는 국가산 연하고 육질이 많은 과실
- 곰팡이, 세균, 바이러스, 선충 및 기타 식물병원균의 순수한 배양체
- 균사를 포함한 버섯 배양체
- 조류의 배양체, 근류균
- 흙과 생명체 격리용 식물성 물질
- 다른 식물 배양체

#### - 사전수입허가가 요구되지 않는 물품

- 식용, 사료용, 제조용 또는 가공용의 과일, 채소 및 저장산물과 같은 식물성 산물로서 식물검역 제한이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
- 흙, 모래 또는 토양이 없고, 완전히 건조, 살균 또는 독살된 식물 표본
- 검역제한이나 금지품이 아니고, 10점 이하로서 승무원이나 승객의 휴대품 또는 우편 물로 들어오는 식물
- 흙, 모래 또는 토양이 없는 신선 화훼, 꽃바구니 등

- 식물검역증 : 식물, 식물성 산물, 또는 식물병해충을 은신시킬 수 있는 다른 물품은 수출국의 식물 검역증을 첨부하여야 함

- 검사량 : 수입식물은 10~15%를 수출하여 검사함(단, 식물검역증이 없는 물품은 100% 검사)

- 흙, 모래 또는 토양제거 : 수입식물, 식물성 산물 및 다른 물품(컨테이너, 자동차 등)은 흙, 모래 또는 토양이 없어야 함

- 포장물질의 승인 : 벼짚, 왕겨, 코코넛잎, 사탕수수잎, 대나무잎, 밀짚, 풀, 잡초 또는



특별검역령하에서 금지품으로 고시한 물품은 수입식물의 포장물질로 사용할 수 없음

- 잠재적인 동물병해충의 수입 : 농작물병해충이 될 수 있는 특정동물은 수입이 금지됨
- 수송매체의 출입 및 수속
  - 선박 및 비행기 도착통보서 제출
  - 식물검역관의 검사, 검역조치, 검역감독 및 통제실시 등
- 식물검역시행수수료 및 비용 : 수입허가증 발행수수료, 검사 및 증명수수료, 격리검역 비용, 금지된 물품의 폐기수수료
- 시간외 근무 수수료
  - 초과근무수수료
  - 식사제공 : 식사시간대에 초과근무를 할 때
  - 운송비
  - 숙박비
- 책임면제 조항
  - 식물검역과 관련된 보관, 채선, 우마차, 노동제공, 지연, 상품소독처리 및 격리검역 등에 대한 책임은 화주가 짐
  - 식물산업국과 식물산업국의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은 식물검역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품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
- 지중해과실파리, 멕시코과실파리, 퀴즐랜드과실파리 및 다른 과실파리가 분포하는 국가산 신선과실 및 열매, 채소의 수입
  - 지중해과실파리, 멕시코과실파리 및 퀴즐랜드과실파리가 분포하는 국가산 : 사전 수입 허가를 받고, 필리핀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수출국에서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(0℃에서 14일 이상)를 한 후에 수입해야함
  - 상기과실파리와 다른 과실파리가 분포하는 국가산
    - ①과실파리가 분포하는지에 대한 확인 실시
    - ②식물산업국장의 사전 수입허가 필요 등
- 수입금지 또는 제한 식물 및 식물성 산물

- 
- 식물 및 식물의 부분(국가별로 지정) : 대나무속, 카카오, 감귤속, 코코넛, Kenaf, 망고, 파초아과, 용설란, 벼, 고무, 사이철, 사탕수수, 담배, 채소 및 다른 과실
  - 식물성 산물(국가별로 지정) : 신선과실 및 채소, 건조 또는 미가공 대나무, 벼짚, 왕겨, 코코넛잎, 사탕수수, 밀짚, 풀 및 잡초

## III 필리핀 라벨링 정보

### □ 라벨링 규정

- 미국에서 적용하는 라벨링 규정이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도 적용됨
- 생수와 포장 가공육은 BFAD(Bureau Of Food and Drugs, 필리핀 식약청)에서 개정한 특별 라벨링 규정에 적용
- 수입 식료품에 요구되는 라벨링 규정
  - 식품명 표시
  - 식품에 사용된 재료 리스트 (함유량 포함), 첨가물, 조미료, 방부제 사용 여부 표시
  - 실함량, 수분 제외 중량
  - 제조업체, 포장 업체, 유통 업체명 및 주소, 수입 제품의 원산지, 필리핀 수입업체, 유통 업체명 및 주소 기재
  - 로트 확인
- BFAD에 포함된 식품 라벨링 규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[www.bfad.gov.ph](http://www.bfad.gov.ph)에 포함된 AO No. 88B (1994)에서 알아 볼 수 있음 (없는 주소로 뜸)
- 특수 식이요법 식품이나 당뇨병 식료에 관한 라벨링은 BFAD에서 요구하는 비타민, 미네랄, 다른 식이요법 재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
- 특용에 관한 제품의 본질적 가치를 구매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- 수입업체는 수출하기 위한 제품의 라벨링 복사본을 미리 BFAD에 제공해야 함. 이것은 수입식료품 및 음료 등록을 위해서 필요함
- 라벨링에 포함된 내용은 BFAD의 기준에 적용이 되는지에 관한 평가를 세밀하게 검토됨
- 각 라벨에 포함된 영양 및 의학 내용은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해외 제품을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를 평가할 때 BFAD가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임
- 특히, 식품보조제, 육아식, 특수 식이식품과 같은 카테고리 2 제품들에 해당

- 입증될 수 없는 내용의 라벨을 가진 제품은 반입이 금지됨
- 필리핀 정부에서 요구하는 생명공학 제품 및 유기농 제품은 라벨링이 없음

□ 원산지 규정

- 역내완전생산기준은 특정국가가 아닌 아세안 역내에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인정(농산물에만 해당)
- 배타적 경제수역(EEZ)을 포함한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의 경우 계약당사국에 등록된 선박 중 계약당사국의 국기를 달고 조업활동을 한 선박이 획득한 것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인정받을 수 있음
- 따라서 역 외국에서 임차한 선박으로 획득한 수산물은 특혜관세를 인정받을 수 없음
- 영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은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연안국을 원산지로 하고, 배타적 경제수역(EEZ)을 포함한 영해 이외의 수역에서 획득한 수산물은 당해 선박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
- 수출당사국에서 역외 산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4단위의 세번 변경요건을 충족하거나 40%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인정(이를 일반적 원칙이라 함)
- 다만, 기초농수산물·일부 민감 농산물·섬유제품·철강·자동차 및 광학기기 등 2,465개 품목(HS 6단위기준)에 대해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별도로 규정
- 동 기준에 따르면 김치는 60%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가 인정되며, 인삼차는 역내산 인삼재료를 사용한 것 중 40%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함
- 한·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일반원칙 이외에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누적기준, 미소기준, 원산지불인정공정기준 및 직접운송원칙 등 다양한 보완기준이 도입
- 계약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부자재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기준

- 예컨대, 말레이시아산 TV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TV 완제품을 조립하고, 동 TV 완제품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할 경우 말레이시아산 TV부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취급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누적
- 동 규정은 역내 산 원부자재의 역내간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음
- 미소기준은 세 번 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 중 세 번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역외 산 재료비가 해당 물품 가격(FOB기준)의 10%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기준임
- 다시 말해서 수입재료비가 10%이하에 불과할 정도로 미소한 수준인 때에는 원산지를 인정 하도록 함으로써 세 번 변경기준의 엄격성을 보완하고자 한 것임
- 다만, HS 50~63류에 해당하는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가격 대신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, 역외산 재료의 중량이 당해 섬유제품 총 중량의 10%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
- 해당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해당하는 단순·경미한 가공만을 거쳐 4단위 세 번 변경요건 또는 40% 이상의 부가가치요건 등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
- 역외 산 물품이 약간의 가공작업만을 거쳐 우회 수출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
- 한·아세안 FTA 원산지불인정 공정
  - 운송·저장 보존 공정(건조·냉동·염수장 보관 등)
  - 탈피·씨제거 및 탈각
  - 포장의 변경, 해체 및 조립
  - 연마, 단순 분쇄 또는 단순절단
  - 세탁·세척·이물질 작업 등
  - 체질·선별·구분·분류·등급
  - 섬유제품(50~60류)에 대한 다림질, 압착, 세탁, 라벨링, 스티칭, 오버로킹, 표백, 방수, 줄이기, 자수(면적기준 5%이하) 작업

- 단순한 혼합작업
  - 단순한 페인트칠, 광택작업
  - 단순한 조립 또는 분해
  - 외피제거·표백·광택 작업
  -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
  - 착색 또는 각 설탕 작업
  - 동물의 도축작업
  - 상표·의장·라벨 등 표시물 부착 또는 인쇄 작업
- 농수산물의 경우 건조·냉동·분쇄·혼합·도축 등의 경미한 가공만 한 경우에도 2단 위 또는 4단위의 품목번호가 변경되며, 공산품의 경우에도 소매포장 또는 단순조립만 해도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
  - 예컨대, HS 3003호의 페니실린을 수입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만 하면 HS 3004호가 변경
  - 한편,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페인트 또는 광택작업이나 테스트 또는 라벨링 작업만 해도 가격조작을 통하여 40%이상의 부가가치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관세를 회피할 수 있음
  - 한·아세안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선택적인역내부가가치 계산공식을 규정
  - 각 체약당사국은 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. 다만, 수입당사국이 역내부가가치의 적정여부에 관한 검증할 경우 수출당사국이 선택한 계산공식을 기초로 하여야함
  - 직접법(Build up Method)

$$\text{역내부가가치(RVC)} = \frac{\text{원산지재료가격(VOM)}}{\text{제품가격(FOB기준)}} \times 100$$

- VOM” 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하며, 원산지 재료, 직접 노동비용, 직접 경상비용, 운송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가격임

- 공제법(Build down Method)

$$\text{역내부가가치(RVC)} = \frac{\text{비원산지재료가격(VNM)}}{\text{제품가격(FOB기준)}} \times 100$$

- 비원산지재료비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, CIF 가격을 알 수 없거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가장 이른 시점에서 확인된 지급가격을 기준으로 함
- 특혜 관세 대우는 협정의 부속서 요건을 충족하고,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됨
-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함
  -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
  -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
  - 그 상품이 하역,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요구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

---

※ 참고자료

- 필리핀 국립식품청 : <http://www.nfa.gov.ph/>
- 필리핀 식품의약국 : [www.fda.gov.ph/](http://www.fda.gov.ph/)
- 필리핀 농업국 : [www.da.gov.ph/](http://www.da.gov.ph/)
-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: [www.qia.go.kr](http://www.qia.go.kr)
- 농수산물식품 수출지원정보 : <http://www.kati.net/>
- 관세청 : [www.customs.go.kr](http://www.customs.go.kr)